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4119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

### 재판경과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41190 판결

서울지방법원 1999. 6. 3 선고 99나10577 판결

###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강BA(소송대리인 변호사 이CA)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9. 6. 3. 선고 99나10577 판결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대부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게 되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대부자에게 이를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금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대부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강행법규로서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법규정에 위반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나, 다만 그 매매대금이 대부금의 상환완료로 정지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라고 한 다음, 위 법 소정의 대부재산인 이 ○○아파트에 관하여 경로된 소외 한D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소외 정DB 사이의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경로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 대물변제약정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 없이 원고와 대부대상자가 아닌 위 정DB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이 ○○아파트에 대한 대부금의 상환완료로 정지조건으로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한DA 명의의 등기에 터잡아 경로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1247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58조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아파트에 대한 대물변제약정 당시 사전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 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러한 절차를 회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법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